

1. 개정이유

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소방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30호, 2023. 4. 11. 공포, 2024. 4. 12. 시행)됨에 따라, 이중화된 소방정보통신망 하나의 회선에 장애 발생 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축의무를 부여하고, 최소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각기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소방정보통신망 회선은 하나의 회선에 장애 발생 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축 의무 부여(안 제3조의2제1항)

나. 소방정보통신망의 최소 회선 수, 구간별 용도, 속도 등을 산정하여 설계하도록 하고, 소방정보통신망은 최소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(안 제3조의2제2항)

다.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에게 점검·관리 의무 부여(안 제3조의2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기본법」 제4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5. ~ 8. 25.)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) ① 소방정보통신망의 이중화된 각 회선은 하나의 회선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은 회선 수, 구간별 용도, 속도 등을 산정하여 설계·구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수는 최소 2회선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, 점검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 · 운영) ① 소방정보통신망의 이중화된 각 회선은 하나의 회선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은 회선 수, 구간별 용도, 속도 등을 산정하여 설계 · 구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정보통신망 회선 수는 최소 2회선 이상이어야 한다.</u> <u>③ 소방청장 및 시 · 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 · 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, 점검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/u>